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1 중 1

발행: 2006-11-08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5년 9월 13일 자 A-412를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학교 관련 사건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고 및 통지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기타 조사기관이 문제의 학생과 교직원을 조사하고 학생을 구속할 경우 학교가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

- 핸드폰 정책에 관한 건강상 예외 보장에 관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1

발행: 2006-11-08

개요

본 규정은 2005년 9월 13일 자 A-412를 우선하여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학내 안전 및 보안 유지를 담당하는 교직원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관련된 범죄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I. 학교에서의 보안

- A. 공립학교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학내 또는 주변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 수준을 달성하고 교사가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권리 보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B. 안전과 질서 유지는 모든 교직원, 뉴욕시 경찰청, 교육청 학생 안전과 예방 서비스 담당실, 학부모 및 학생의 공동 책임입니다.
- C. 학교장 및 학교안전요원(School Safety Agent: SSA)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서로 즉시 알려야 합니다.
- D.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에 이르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 학교와 관련된 범죄 및 사건의 통지 및 보고 요건

다음은 학교와 관련된 범죄 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준수해야 할 통지 및 보고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관련 범죄 및 사건은 교내 또는 학교 주변(예: 학교 건물 앞 또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같은 학교 관련 인물에 의해 발생)에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 명시한 통지 요건 이외에도 학교와 관련된 심각한 형사상, 비형사상 및/또는 의료 사고가 공공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기사화될 만한 사항인 경우 (예. 총기사고, 폭파 위협, 버스 사고, 자살 시도), 해당 교육장의 피지명인은 반드시 교육청 긴급 정보 센터(EIC) 번호 (718) 935-3210 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1999년 1월 7일자 교육감의 특별회보 No. 7을 참조하십시오).

- A. 학교 관련 범죄의 통지 요건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2

발행: 2006-11-08

다음 통지 요건은 정보 출처 및 비밀 보장 요청과 관계 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보유 사회 복지사, 심리학자 및 SAPIS 는 비밀 보장 및 면책 특권 정보에 대한 사항을 법무 서비스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1. 학생에 의한 범죄

학교안전요원(SSA) 또는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 DOE) 직원에게 학생에 의해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에 위협이 되는 학교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나 혐의가 제공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SSA/DOE 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학교장/피지명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b. 안전 상에 즉시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 SSA/DOE 는 학교장/피지명인에게 해당 사건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경찰과 SSA 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SA 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c. 상기 (a) 및 (b)뿐만 아니라, 학교장/피지명인은 반드시 또한 해당 학부모* 및 담당 교육장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2. 교육청 직원에 의한 범죄

SSA/DOE 은 자원 봉사자와 같은 학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청 직원 또는 개인이 학교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보나 혐의가 제공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SSA/DOE 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학교장/피지명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b. 안전 상에 즉시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 SSA/DOE 는 학교장/피지명인에게 해당 사건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을 경찰, 교육장, SSA 및 뉴욕시 학교 조사 특별 위원장 ("SCOI")에게 (212) 510-1400 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체벌에 관련된 혐의인 경우 특별 조사 담당실).

* 본 규정에 사용된 “ 학부모 ” 라는 용어는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대행자를 뜻합니다.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3

발행: 2006-11-08

c. 학생이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3. 교육청 직원에 의한 성관련 위법 행위

뉴욕시 교육청의 모든 직원 및 행정직원들은 교육청 행정직원, 직원 또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계된 기타 자원 봉사자와 연루된 성관련 위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지한 즉시 소속 학교장/수퍼바이저 및 SCOI 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학교 안팎에서의 성관련 범죄에까지 확대됩니다. 학교장/수퍼바이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학교장/부서장/교육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수퍼바이저는 이를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4. 의료적 응급상황

a.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SSA/DOE 는 911 로 전화하여 EMS/소방대원 파견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SSA/DOE 는 학교장/피지명인에게 연락하여 즉시 훈련받은 보건 전문가(예: 의료 보조원, 간호사, 의사 보조) 현장에 도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b. 의료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학생인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c. 만일 학생이 부모가 오기 전에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할 경우, 교직원 중 한 명이 반드시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한다.

5. 아동 학대

a. 교직원이 학부모, 학생 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학생의 가정에서 거주하는 사람등으로부터 어떤 학생이 학대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거나 방치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모든 경우, 교직원은 반드시 즉시 이 사실을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그러한 사실을 뉴욕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중앙 등록부(New York Central State Register for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4

발행: 2006-11-08

전화번호(800) 635-1522 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과 교직원은 교육감 규정 A-750 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 담당자가 3:00 p.m 까지 응답이 없고 학생이 귀가할 경우 학생의 생명 및/또는 안전이 위험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교육장/피지명인과 논의한 후 911 에 연락하여 반드시 긴급 경찰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750 참조)

- b. 학생이 위의 (a)에 언급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피지명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학생의 부모와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B. 학교 관련 사건의 통지 요건

다음은 SSA/DOE 직원이 학교 징계, 기타 후속 조치 및/또는 중앙부서/교육장에게 통지 등이 필요한 학교 관련 비행사상 사건, 사고 또는 의학적 응급 상황에 대해 알게 되거나 목격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1.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SSA/DOE 는 위의 II.A.4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SSA/DOE 는 반드시 학교장/피지명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3. 학교장/피지명인은 어떤 징계 또는 후속 조치를 취할 지 결정한 다음 교육장과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4. 체벌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 학교장은 특별조사 담당실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C. 서면 보고 요건

학교 관련 범죄, 사건 및 그로 인한 부상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는 학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사건 보고

학교장/피지명인은 사건 발생 24 시간 이내에 학교와 관련된 모든 범죄 및 사건에 대한 사건 보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뉴욕시 교육청 관할 지역 또는 학교 후원 행사에서 발생한 학생, 교직원 및 기타 개인과 관련된 모든 부상에 대해 포괄적 상해 보고서(Comprehensive Injury Report)를 교육감 규정 A-730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5

발행: 2006-11-08

- a. 사건 보고서는 학교장/피지명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건 보고서는 발생한 사건을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 b. 학교장/피지명인은 반드시 관련자 및 목격자가 서명한 자필 진술서에 시간, 날짜, 발생 장소와 함께 사건의 내용 및 순서를 상세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2. 뉴욕시 경찰청(NYPD) 학교 안전 사고 보고서
- a. SSA 는 중죄, 경범죄 및 무기 관련 사건, 규제 약물, 폭력단 관련 범죄 행위 등과 관련해 학생의 이름이 포함된 NYPD 학교 안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SA 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은 SSA 에게 학생의 이름을 포함하여 사건에 대해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 b. SSA 는 NYPD 학교 안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사고에는 관련된 사건의 해당 학생 이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범죄성 화약류 소지, 비범죄성 침해 행위, 배회, 무질서한 행동 및 괴롭힘. SSA 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은 SSA 에게 학생의 이름을 제외하고 사건에 대해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 c. SSA 는 보고서 사본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학교 안전운영 담당 센터에 반드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III. 학생 구속

- A. 즉시 구속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SSA 는 학생을 즉시 구속하고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B. 즉시 구속 또는 기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의 경우 SSA 및/또는 NYPD 는 학생을 구속하거나 형사상의 절차를 밟기 전에 학교장/피지명인과 최대한 논의해야 합니다
- C. 학생이 구속될 경우 학교장은 즉시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구속 경관에게 교직원과 해당 학생이 경찰서까지 함께 동행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동행이 거부될 경우, 교직원(반드시 SSA 가 아니어야 함)은 학생이 이송되는 장소까지 즉시 따라가야 합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하거나 따라가는 교직원은 반드시 구속을 초래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직원은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6

발행: 2006-11-08

적절한 시간 동안 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까지 학생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IV. 경찰 또는 기타 기관의 조사

A. 학생 및 직원 질문

1. 경찰관 또는 기타 조사기관이 학생이 저지른 학교 관련 범죄에 대해 조사할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교직원, 기타 학생 이외의 목격자 및 직원, 또는 기타 학생 이외의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허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피지명인은 조사에 응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학교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관 또는 기타 조사기관이 학생에게 질문을 할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통지가 되면 학교장/피지명인 또는 경찰관/조사기관은 학부모와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거절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학교장/피지명인은 경찰관/조사기관에게 학생과의 인터뷰를 허용해야 합니다. 학교장/피지명인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3. 경찰관/조사기관이 학교 관련 범죄에 대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데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경찰관에게 다음 상황에서 학생과 이야기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 a. 범죄 행위자로 의심되는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경찰관/조사기관은 학교 관계자가 절박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언급할 경우에만 학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는 학교장/피지명인이 결정합니다. 절박한 상황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을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법무서비스과로 연락해야 합니다.
 - b. 범죄 행위 용의자가 아닌(다시 말해 희생자 또는 목격자)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경찰관/조사기관은 조사를 지속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여부는 학교장/피지명인이 결정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을 경우 법무서비스과로 연락해야 합니다.
 - c.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않고 학생을 조사할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동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7

발행: 2006-11-08

학교장/피지명인은 학생에게 조사에 응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경찰관 또는 기타 조사기관이 학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 대한 아동 학대 진술과 관련해 학생을 조사할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학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 또는 기타 조사기관이 같은 집에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 학대 진술에 대해 학생을 조사할 경우 학교장은 경찰관 또는 조사기관과 논의하여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조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학교장 또는 학생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른이 동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성적기록부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경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규정 A-750 참조)
5. 경찰관 또는 기타 조사기관이 학생이 저지른 학교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 학생 또는 교직원을 조사하려는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경찰관 또는 기타 조사기관에게 방과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관 또는 기타 조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알릴 경우, 교직원들은 법률 서비스 담당실(Office of Legal Services)로 연락하여 조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가 허용되면 가능한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V. 금지물품의 증거 및 압수(무기, 마약 등.)

- A. 경찰관이 금지품을 소지한 학생을 구속하는 경우 물품을 압수하고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B. 학교 관계자는 NYPD 증명서(소유물 담당자의 송장)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 C. 경찰관이 학교에서 발견된 무기류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1. 학교장/피지명인은 DOE 증명서 양식 및 봉투를 사용해 해당 무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는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학교장/피지명인은 DOE 의 학생 안전 및 예방 서비스과(Division of Student Safety and Prevention Services: DSS&PS)로 즉시 알려 NYPD 의 학교 안전과가 소지 금지품을 가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8

발행: 2006-11-08

- 3. 무기류는 운송을 위해 NYPD 학교안전과로 이송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4. NYPD 가 금지품을 수거하러 올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금지품을 넘겨주고 봉인된 증명 봉투에 넣어 증명해야 합니다.
 - 5. 금지품이 교육장 정학 심리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 학교장/피지명인은 DSS&PS 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D. 핸드폰, 아이패드, 무선호출기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기는 학교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의 의료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 건물내에서 학생이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적 예외 인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첨부 A 참조)
- E. 학교에서 핸드폰, 아이패드, 무선호출기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압수했을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즉시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학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압수된 물품을 찾아가도록 해야합니다.
- F. 핸드폰, 아이패드, 무선호출기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기는 학부모가 방문하였을 때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학부모가 반복해서 압수된 물품을 찾으러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VI. 학생 정보 공개

학생이 건강 또는 안전 상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결석할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 학부모의 서면 동의, 또는 18 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학생 기록의 어떠한 정보도 NYPD 와 SSA 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건강 또는 안전 상의 긴급 상황이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특수 상태 또는 혼란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당장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긴박한 위험이란 현재 또는 이전의 학생이 살인죄, 방화죄, 강도, 성폭력, 무기류 소지 또는 폭행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폭력적 범죄에 대한 적극적 조사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이전 학생이 용의자이거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VII.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교육감 규정

항목: 학생

번호: A-412

주제: 학교에서의 보안

페이지: 9 중 9

발행: 2006-11-08

전화번호

212-374-
6095

*Office of School Intervention and
Development*

뉴욕시 교육청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5598

핸드폰 정책에 관한 건강상 예외 보장에 관한 절차

A. 요청 제출

1. 의료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 건물내에서 학생이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적 예외를 인정 받으려면, 학부모는 반드시 의사가 제공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 양식을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생의 건강 상태 설명;
 - 이 학생이 핸드폰 소지 금지의 예외를 적용 받아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 이런 조정이 필요한 기간; 및
 - 의사의 서명 (첨부 양식 참조).
3. 학교장은 양식이 불충분하거나 위조된것 처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요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4. 예외 요청은 반드시 매년 제출되어야 합니다.

B. 핸드폰 이용 상태

1. 학생들은 해당 요청이 승인되면 특별 패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패스는 반드시 학생이 학교 건물에 출입할 때 제시되어야 합니다.
2. 예외를 인정받은 학생들은 학교 건물 내에 본인의 핸드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학생이 핸드폰을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핸드폰은 반드시 꺼놓고 건물에 출입할 때 학교 직원에게 맡겨 놓았다가 하교할 때 학생에게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4. 학교 직원들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핸드폰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5. 만약 핸드폰이 사용되었거나 켜놓았다면, 해당 학생은 뉴욕시 규율 규정에 적혀있는 바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C. 데이터 수집

- 모든 건강상 예외 요청은 반드시 ATS 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은 반드시 핸드폰 예외 요청이 수락 또는 거부되었는지의 여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은 반드시 또한 예외를 수락받은 학생들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D. 비밀 보장

핸드폰 예외 처리와 관련하여 수집된 의료 정보는 반드시 교직원이 적절한 비밀유지 기준에 부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명시한 IEP 또는 504 조정 계획을 갖고 있으며 건강상 예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들 절차에 따라 요청된 문서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 레터헤드 공간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허가 요청 - 2006-2007 학년도

교육감 규정 A-412 에 따라, 학생들은 의료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교 건물내에서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외가 학생이 핸드폰을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의사가 섹션 A 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작성한 양식은 반드시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학생 성명: 성: _____ 이름: _____ 중간이름: _____

남: _____ 여: _____ 생년월일: _____ 아이디 #: _____

학교: _____ 학급: _____

적용되는 경우 한 곳에 체크: 이 학생은 의료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IEP _____ 또는 504 조정 _____ 을 받고 있습니다.

(*** IEP 또는 504 조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허가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요청하는 허가에 관한 의사의 소견

1. 건강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소견 (진단/상태 포함):

2. 핸드폰이 건강상 필수적인 이유 설명:

3. 학생이 학년도 동안 핸드폰 금지 예외가 필요한 기간 기재:

의사의 성명(인쇄체)

의사의 서명

서명 날짜

뉴욕주 등록 번호

 의사/클리닉 주소

 우편번호

 의사/클리닉 전화번호

 의사/클리닉 팩스번호

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저는 제 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학교 건물에 출입할 때 본인의 핸드폰을 학교 직원에게 맡겨 놓고 하교할 때 핸드폰을 돌려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제 아이가 핸드폰을 사용하였거나 켜놓았다면, 뉴욕시 규율 규정에 적혀있는 바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양식에 제공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학부모 성명 및 주소를 인쇄체로 기재해 주십시오:

 학부모 성명

 학부모 서명

 학부모 주소

 우편번호

 서명 날짜

 주중 전화 번호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이 신청서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청은 반드시 매년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교장 용: 승인 거부

교장 서명: _____

서명 날짜: _____